

대전지방법원 2022. 2. 16 선고 2021가단6102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]

---

## 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C

2. D

3. E

4. F

5. G

6. H

변 론 종 결 2022. 2. 16.

판 결 선 고 2022. 2. 16.

## 주 문

1. 원고에게,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C은 13분의 3 지분, 나머지 피고들은 13분의 2지분에 관하여, 각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90. 9. 7. 접수 제5024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해서 2004. 1. 30.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가. 피고 H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나. 나머지 피고들 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 김양규

별지